

	<h2 style="margin: 0;">정보보안위원회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5-0-15
			제정일자	2013.04.01
	개정일자	2017.03.01	개정번호	Ver. 1
		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보안조직관리지침에 의거 동양미래대학교 정보보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동양미래대학교 정보보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3조(구성과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운영팀장, 총무팀장, 기획예산팀장, 입시관리팀장, 학생지원팀장, 정보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정보지원실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임용 기간과 같다.

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관 위원회 관리부서 직원 중 1명을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다.

③ 간사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·장소 및 출석위원의 성명
2. 토론·심의내용 및 의결내용의 요지

제5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·자문한다.

- ① 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칙과 방침 및 정책의 수립, 개정에 관한 사항
- ② 정보보안 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
- ③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
- ④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안대책의 수립 및 추진
- ⑤ 정보보안 위규 적발 강화 및 사고조사 처리
- ⑥ 정보보안 업무의 조정 및 감독
- ⑦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- ⑧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7조(규칙의 제정 및 개정) ①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②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은 규칙 제6조에 따른다.

제8조(경비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경비는 대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